발표 스크립트

4

일단 해당 판결을 보기 전에 먼저 사실 관계 먼저 파악을 해야함

해당 사실관계 파악하기 앞서서 일단 나오는 피고에 대해서 먼저 집고 넘어가야함

5

- 1. 약국 관리 프로그램 일종- 요양급여비용 청구 & 조제데이터를 입력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 3. 처방전 정보

(환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및 용업, 처방전 발급연원일 및 사용기간 등)

- 4. 2011년 1월 28일경
- 4. 조제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 → 조제 정보를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받음
 - 5. 수집된 처방전 정보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 처방전 발급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및 용법, 처방전 발급 연월일 등의 정보(이하"이 사건 정보")를 피고 회사 C에게 제공

8

- 1. 1심 법원은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identifiable)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적절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식별성을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 4. 비식별화 적정성은 "원본 데이터의 특성, 비식별화된 정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 비식별화 조치에 활용된 기법·세부기술의 수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및 방법, 이용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력·경제력에 따른 재식별화 능력,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재식별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유무,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비식별화된 정보와 외부 정보 사이의 결합 가능성, 비식별화

된 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의 관계,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고 했다.

9

- 1) 1단계 방식: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중 홀수 자리와 짝수 자리를 각 다른 암호화 규칙에 따라 영어 알파벳으로 치환한 다음 양끝 2자리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한 이후, 변환된 문자열의 6번째 자리의 문자를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13번째 자리의 문자를 첫 번째 자리에 추가하여 15자리의 알파벳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암호화
- 2) 2단계 방식: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SHA-512 방식으로 일방향 암호화
- 3) 3단계 방식: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 생년월일, 성별로 환자를 특정한 이후 이를 SHA-512 방식으로 일방향 암호화
- 2, 3 단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sha512는 암호화 기술적 수준이 높고

필요한 매칭 테이블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C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자료를 생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암호화된 정보를 재식별화할 경제적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 C 또는 피고 회사 C의 본사인 D가 실제로 복호화 등을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적절한 2, 3단계 암호화 방식에 따라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는 비식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12

- 2. 회사 C가 매칭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3. 개인을 식별화 할 수 없느 상태로 제공한 것이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음

14

판례에 대한 간단한 해설 진행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함

나. 소송경과

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등 판결)

1심 법원은 MAC 주소와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문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집된 MAC 주소와 IP 주소를 분석한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고, 개별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한 뒤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원고들 소속 직원인 개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2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등 판결, 대상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MAC 주소와 IP 주소를 수집하였으므로 이를 분석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집된 MAC 주소와 IP 주소를 분석한 결과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RAM에 탑재하여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면책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사용자책임도 부정하였다.

3) 3심(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등 판결)

법원은 MAC 주소와 IP 주소가 개인정보인지, 그 수집이 적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판결 문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2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유지되었다.

19

이 사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와 MAC 주소가 피고의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고, 증거는 이러한 IP 주소와 MAC 주소를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와 MAC 주소가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5

이 두 판례를 비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의 형태가 아니라 **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라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2017나2073963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판결은, 단방향 암호화처럼 기술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처리도 **매칭 테이블 등 외부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2014나19631(MAC 주소 및 IP 주소의 개인정보성)은 기술적 식별자(MAC/IP 주소)도 현실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유추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실제로 판결문은 이를 '당연한 전제'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식별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 빅데이터나 AI 기술 활용 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